

의안번호	2200694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4.08.06.
추계번호	24C1156

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필수의료·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 실시 및 기금 관리·운용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3,100만원, 2029년 1억 1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억 9,100만원(연평균 1억 5,820만원)으로 추계됨
-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147	0	0	0	0	147	29.4
필수의료 실태조사(안 제8조)	69	0	0	0	0	69	13.8
기금의 관리·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(안 제27조·제29조)	115	115	115	115	115	575	115
합 계	331	115	115	115	115	791	158.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·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－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,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제2항의 각호가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8조 (필수의료 실태조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의료·지역의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. 필수의료·지역의료 제공체계에 관한 사항 2. 지역별·의료기관 종류별 필수의료·지역의료의 제공 실태에 관한 사항 3. 필수의료·지역의료 종사자의 근무시간, 근무형태, 이직률, 직업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. 필수의료·지역의료 종사자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. 필수의료·지역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. 지역별 필수의료·지역의료 제공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9조 (필수의료종사자 양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·지역의료 종사자의 양성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0조 (지역필수의사 지원 등)	○ 시·도지사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의사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필수의사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11조 (필수의료·지역의료 인프라 육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·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1. 의료기관의 필수의료·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의 구축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. 의료기관의 특성화·전문화 및 교육·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. 의료기관과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필수의료·지역의료 인프라 육성에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3조 (지역 필수의료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, 관련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21조 (차입금)	○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함(제3항)	재량규정
8	안 제27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	○ 기금*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함(제1항) - 기금의 관리·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* 정부는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(안 제25조)	의무규정
9	안 제29조 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)	○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둠(제1항) ○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	○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8조(필수의료 실태조사)		
3	안 제9조(필수의료종사자 양성)	×	○ 제3호: 의 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0조(지역필수의사 지원 등)	×	
5	안 제11조(필수의료·지역의료 인프라 육성)	×	
6	안 제13조(지역 필수의료 진료협력체 계 구축 등)	×	
7	안 제21조(차입금)	×	
8	안 제2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	○	○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9	안 제29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)	○	

- (안 제9조·제10조·제11조·13조)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(1) 필수의료·지역의료 종사자의 양성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, (2) 지역필수의사 지원, (3) 필수의료·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경비 보조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- (안 제10조)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」(2024.02.01.) 발표를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,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

[표 2]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

구분	상세내용
지역의료리더 육성제	○ 대학-지자체-학생 3자 계약 下 ‘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’ 선택 시 장학금·수련비용 지원 + 교수 채용 할당 + 定住 지원 → 일정 기간 지역 근무
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	○ 충분한 수입 + 定住 여건(교육, 주거 등 지자체 지원)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- 지자체·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배정, 지역의료 재정지원, 시범사업 등 연계

자료: 보건복지부 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」(2024.02.01.)

- (안 제13조)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과 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내 “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”을 신설하여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최대 500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,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

[표 3]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모델 예시

구분	상세내용
목적	○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 및 지역 내 협력진료 활성화 + 지역 병·의원 역량 강화 － 향후 포괄적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로 단계적 발전
방식	○ 권역책임의료기관-시·도 특성화 분야* 선정,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방안(건보 외 시설·장비 등 자체 재정지원 방안 포함) 제시 → 심사·선정 후 시범사업 지원 － 예시: (중증진료 강화) 응급, 심뇌혈관 질환 진료, (지역의료균형) 암 질환 및 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, (포괄서비스) 노인성 질환 및 재활, 모자보건 등
보상	○ 성과 기반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, 특성화협력 진료량 연계 총 보상규모 설정

자료: 보건복지부 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」(2024.02.01.)

- (안 제21조) 제정안에 따라 차입을 할 경우 이자 상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 필요 재원 규모와 장기 및 일시 차입 여부, 이자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제정안은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한정함
 - － 이때 차입금 외의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그 밖의 수입금이 제시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(안 제5조)과 실태조사 실시(안 제8조), 기금 관리·운용(안 제27조)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(안 제29조)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
 - 각 조문별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-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보건복지부 유사 사례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
 - － 2021년 보건복지부의 ‘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(1억 4,700만원)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추계기간 중 첫 해인 2025년에만 1억 4,700만원 발생

[표 4]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147	－	－	－	－	147	29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필수의료 실태조사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하며, 보건복지부 “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－ 2022년 보건복지부의 “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”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(6,900만원)가 추계 첫 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추계기간 중 첫 해인 2025년에만 6,900만원 발생

[표 5]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필수의료 실태조사 (안 제8조)	69	-	-	-	-	69	13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(안 제27조·제29조)

- 제정안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위한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준용하여 기금 관리 방법 및 위원회 규모 및 개최 횟수 등을 가정
 -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직접 관리·운용하며, 2024년 기준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에 1억 1,500만원을 배정하였고 기금관리비는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,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비(회의실 대여료, 위촉위원 수당 등) 등을 포함하고 있음
 -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정원은 15명(당연직 7인, 위촉 9인)이며, 2022년 7월~2023년 6월 1년간 총 5회(대면 2회, 서면 3회) 개최되었음
- 추계 결과, 추계기간 중 5억 7,500만원 발생

[표 6]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기금 관리·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(안 제27조·제29조)	115	115	115	115	115	575	1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